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4
----------	-----

제출년월일 : 1999. 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동파리 “정착마을” 조성지구내에 국제적인 민간기독교자원 봉사 단체인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단장 : 지미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일부 유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북한의 열악한 주거문제 및 남북대화의 장을 열어서 한국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전세계에 알려 남북교류에 기여코자 함.

□ 주요골자

- 가. 위원회 구성시 “사랑의집짓기운동 관계자”를 추가 포함
(안 제3조 제3항 4호)
- 나. 입주자 선발 자격 요건에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건립분에 대하여는 입주자 선발 요건을 갖춘자로서 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하도록 함(안 제10조 제3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사랑의집짓기운동 관계자.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한 입주자 선발기준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 구성) ①~②(생략) ③(생략) (신설) 제10조(입주자 선발) ①~②(생략) (신설)	제3조(위원회 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4.사랑의집짓기운동 관계자. 제10조(입주자 선발) ①~②(현행과 같음) ③<u>사랑의집짓기 사업에 대한 입주자 선발 기준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u>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조성되는 동파리 정착마을(이하“정착마을”이라 한다)조성과 입주영농대상자 선발 및 운영·관리를 위한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정착마을 조성에 관련된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정착마을 입주자 선발에 관한 사항
- 3.정착마을 택지분양 방법 및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4.정착마을운영 규정 및 입주자 관리규정
- 5.기타 정착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 2.육군제1사단 작전참모. 관할기무부대장. 파주경찰서보안과장
- 3.시의원과 민통선북방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자
- 4.사랑의집짓기운동 관계자(신설)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착마을조성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획실장, 농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지적과장, 군내
출장소장

2. 육군 제1사단 관계관, 관할기무부대 관계관등 정착마을 조성에 관련
있는 유관기관 실무담당자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조정,협의한다.

1. 위원회 심의에 앞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3. 정착마을 조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실무적인 협의사항

4. 기타 정착마을 조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정착
촌 입주가 완료될 때 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으로서 부득이 한 사정이 있거나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운영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건설과장으로,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개
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입주자 선발) ① 위원회에서는 정착마을 입주자를 선발할 경우에
는 공개로 선발하되 사전에 입주자 자격요건,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요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를 선발함에 있어 민통선정착마을 조성의 목적에 부합 되도록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입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동면, 군내면, 진서면, 장단면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자
2. 입주할 주택을 자기부담으로 건축할 능력이 있는 자
3. 영농을 할 여건을 갖춘 자
4. 신원이 확실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자

③ 사랑의집짓기 사업에 대한 입주자 선발기준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신 설)

제11조(입주자 심사) 위원회에서는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면접 등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제12조(분양계획 수립등) 주택용지의 분양시기 및 분양방법, 분양가격이 포함된 분양계획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정착촌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